

# 김정일 변호사 행정법 강의계획서

“20년간의 강의 노하우, 명성은 헛되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출제경향을 꿰뚫는 적중률의 모의고사와 자세한 해설,  
정확한 핵심내용 점검으로 안전하게 정리하십시오.  
행정법, 고득점으로 합격하십시오.”

■ ■ 담 당 김정일 변호사

■ ■ 강의일정 2017년 3/31(금) ~ 4/21(금), 총 19회

■ ■ 시 간 [오후 실강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1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10분 ~ 5시40분  
※ 실강반도 필기자료가 제공되며, 매일 강의 종료 후 개별질문 및 답안첨삭을 진행합니다.

[당일 저녁영상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6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6시 ~ 7시 / (강의) 7시10분 ~ 10시40분

[익일 오전영상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8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8시 ~ 9시 / (강의) 9시10분 ~ 12시40분

■ ■ 강의교재 각자 기본서 및 법전 +  
행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제본집 및 추가자료 무료제공) +  
행정법 연습사례 중 중요사례문제(무료제공) +  
2015~2017년 최신판례자료(무료제공) + 기타사례자료(무료제공)

■ ■ 강의진행  
특이점 매회 시험마다 소정의 답안지를 제가 직접 채점한 후 강의시간에 간략히 강평하며, 답안작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강의 끝난 후 1시간동안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 및 답안지에 대한 개인강평을 진행하여 고득점을 위한 답안작성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교재소개

### 1. 행정법 쟁점별 핵심암기자료(제본집 및 추가자료 무료제공)

: 합격을 위해 필요한 만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설과 판례를 답안지에 쓸 수 있을 만큼 요약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017년 박균성, 홍정선, 정하중 교수님의 기본서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부관, 변경처분 등) 및 **고득점을 위해 추가해야할 검토자료**, 2016년~2017년 최신판례 자료는 위 암기장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암기장으로 이미 정리하신 분들은 추가되는 자료만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 자료들을 꼼꼼히 암기하신다면 답안지를 서술할 때 막히는 부분 없이 **고득점**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 2. 행정법연습사례 중 중요사례문제(무료제공)

: 행정법연습에 있는 문제 중 2순환때 풀지 않은 사례문제와 반드시 풀어봐야 할 기출문제를 문제만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의시간에 나누어 드린 사례문제를 열심히 풀이하며 이해한다면 어떠한 시험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고득점**하실 것이라 자신합니다. 5년간 5급공채 기출문제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위 사례자료의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3. 2015, 2016, 2017년 최신판례자료(무료제공)

: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기 가장 좋은 부분은 판례인 바, 최근 3년간의 판례를 교과서 목차별로 정리한 자료로써 판례와 더불어 행정법 전체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사례자료 등(무료제공)

※ 이번 3순환강의의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일일이 확인해가며 교수님 기본서에서 변경된 내용들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모의고사는 신작구성을 원칙으로 최근 출제경향을 적극 반영하여 출제하였습니다.

## ■ ■ 강의중심

1. 먼저 3순환 시기에 중요한 것은 암기입니다. 행정법의 중요쟁점에 대하여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답안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암기자료 및 이에 대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중요쟁점에 대하여 **확실히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사례문제에서 논점을 추출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쟁점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례문제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가 어떠한 쟁점을 물어보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히 답안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3순환에서는, **행정법 연습 사례 및 모의고사 해설 등을 통해 '사례에서 어떠한 문구가 나오면 어떤 쟁점을 물어보는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논점 추출 방법을 **확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안포섭능력의 향상**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례문제에 대하여 수험생들의 답안점수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안포섭이 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학설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3순환 강의를 통해 학설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 향상시켜, **고득점 획득에 필수요소인 '설득력 있는 사안포섭과 검토'**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법의  
고득점 방법

최근 7년간 5급공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 행정법문제는 모두 사례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거와 달리 분설형 문제로 출제된다. 분설형 문제란 이미 문제에서 대략적인 논점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위 사안에서 청문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는가?’라고 물어보는 경우이다.

이러한 분설형 문제는 논점 파악이 쉽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물론 2015년 5급공채 시험문제처럼 ‘잔여지수용’이라는 평소에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출제되면 그에 대한 답안작성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아직 행정법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험생들에게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수험생들 간의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학설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 둘째 답안작성방법의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학설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무명항고소송으로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가 논점이라고 하자.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서나 요약서에 나와 있는 것을 암기하여 그대로 답안지를 작성하면 기본적인 점수만 부여될 것이다. 그런데 검토에서 “행정처분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라 한다. 그런데 당사자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를 하였다라는 것은 행정청이 허가라는 처분을 안하겠다는 판단권을 1차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을 맡은 법원이 이러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행사에 대하여 복잡적으로 심리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적 소송인 항고소송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고 법원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대신 행사한 것이 되지 않아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문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소송을 해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검토하건대, 행정소송의 유형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정하는 법률의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는 대신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볼 때, 인정설과 절충설은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목적만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의 명시적인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견해로, 해석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입법을 행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자에 의해 법률개정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쓰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항고소송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교수님께 정확히 표현하였으므로 고득점이 가능하다.

또 소송요건에 대한 검토에서 “소송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게 되면 남소를 막지 못하여 법원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면 법원이 정말 중요한 분쟁에 좀 더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재판의 부실화가 초래된다. 그렇다고 소송요건을 너무 좁게 해석하면 헌법 제27조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양자를 조화하는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준다면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된 답안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제될 분설형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답안지에 현출시키는 부분인 검토와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였다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강의하는 순환이 바로 3순환이다.

##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주제
■ 제 1 회	3월 31일 (금)	행정법의 전체체계, 행정법 사례풀이방법
■ 제 2 회	4월 1일 (토)	실질적 의미의 행정, 통치행위, 법률유보의 범위,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 평등,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신의성실, 실권의 법리), 행정법의 효력(소급입법 및 소급적용금지원칙)
■ 제 3 회	4월 3일 (일)	행정법 법원 상호간의 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무수탁사인, 공권의 확대화경향(제3유형에서의 원고적격충족여부)
■ 제 4 회	4월 4일 (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적극적 공권(협회의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행정법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리, 하자의 효과, 신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제 5 회	4월 5일 (수)	행정입법(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제 6 회	4월 6일 (목)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행정행위의 종류(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과 구별실익, 판단여지, 허가, 특허, 인가, 공증, 제3자효적 행정행위)
■ 제 7 회	4월 7일 (금)	부관의 종류 및 한계,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제 8 회	4월 8일 (토)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여부 및 그 정도, 하자승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 제 9 회	4월 10일 (일)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의 자동결정
■ 제 10 회	4월 11일 (화)	행정절차법(처분절차,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정보공개제도,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 제 11 회	4월 12일 (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해석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 제 12 회	4월 13일 (목)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선택적청구권인정여부, 이중배상금지, 국배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 제 13 회	4월 14일 (금)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해석 및 제6조에 관련된 학설과 판례, 손실보상 전반
■ 제 14 회	4월 15일 (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I
■ 제 15 회	4월 17일 (일)	행정소송 II
■ 제 16 회	4월 18일 (화)	행정소송 III
■ 제 17 회	4월 19일 (수)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 제 18 회	4월 20일 (목)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 제 19 회	4월 21일 (금)	공물법, 영조물법, 공기업법, 토지행정법, 공용부담법, 경제행정법, 환경행정법

항상 행복하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